

1 폐업지원 대환대출 제도 개선 추진

1. 추진 배경

- 기존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대상 기간 확대, 보증부대출 금리 지원, 복수사업장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제고 도모

2. 주요 내용

구분	현행	제도 개선 후
대상기간 확대	기존 사업자대출 실행일이 '24.12.22. 이전인 대출 대상	기존 사업자대출 실행일이 '25.6.30. 이전인 대출 대상
	⇒ 지원 대상기간을 현행 대비 약 6개월 확대	
보증부대출 지원 확대	(1억원 이하) 보증기한 7년 , 저금리 지원 (금융채 5년물+0.1%)	(1억원 이하) 보증기한 15년 으로 확대, 저금리 지원 (금융채 5년물+0.1%), 차주 보증료 전액 지원(중기부 예산)
	⇒ 보증유형 분할상환 및 저금리 지원 기간 확대	
복수사업장 일괄 폐업시 지원 확대	복수사업장 일괄 폐업 시, 마지막으로 잔여한 <u>하나의 사업장의</u> 사업자대출에만 지원 시행	복수사업장 일괄 폐업시,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지원 시행
	⇒ 복수사업장을 일괄로 폐업 시 , 폐업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지원	

3. 향후 일정

- 관련 모범규준 및 실무 매뉴얼 개정, 지신보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.5. 시행.
※ 은행별 준비여건에 따라 순차적 시행 가능

2 폐업 비용 지원대출 신설 추진

1. 추진 배경

- 소상공인 현장간담회(7.17.)에서 제기된 ‘폐업 철거 시 소상공인 자금 필요 시점과 중기부 철거지원금 지급 시점 간 자금공백(2~3개월) 문제’ 해소를 위해 ‘폐업 비용 지원대출’ 신설 추진

2. 주요 내용

- 폐업(예정)자에게 철거비를 先 대출하고, 추후 중기부 철거지원금으로 상환하는 ‘폐업 비용 지원대출’ 신설 추진
- 폐업 비용 지원대출 추진(안)
 - (대상) 중기부 철거비 지원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개인사업자
 - (한도) 가계대출 최대 6백만원(중기부 철거비 지원금 한도 內)
 - ※ 금리 수준은 은행-서금원간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예정
 - (대출기간) 1년(만기연장 불가)
 - (보증기관) 서민금융진흥원
 - (상환방식) 일시상환
 - 중기부 철거지원금을 지정계좌로 입금받아 자동으로 대출상환
 - 중기부 철거지원금이 대출금액보다 작을 경우, 대출잔액은 만기 시 일시상환*
 - * 대출잔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(서민금융진흥원)에 대위변제 청구
 - (재원) 햇살론119 은행 출연금(총 3천억원) 중 일부 활용
- ※ 단, 상기 상품 세부 내용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,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향후 일정

- 서금원 등 관계기관 협의, 전산개발 등을 통해 '26년 상반기 상품 출시 목표

3 폐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 일시상환 유예 명문화 추진

1. 추진 배경

-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폐업은 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중 하나로, 원칙 상 은행은 차주의 폐업사실을 인지 시 일시상환을 요청해야 함
- 일부 언론에서 사업자대출 일시상환 부담을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폐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지목

2. 은행권 현황

- 은행권은 사업자대출 차주의 폐업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정상상환 중인 사업자대출에 대해서 일시상환을 요청하지 않고, 만기시점에 상환을 요청하고 있음
- 단, 해당 내용의 은행 업무방법서 반영 여부는 은행별로 상이하며, 반영 방식도 은행별로 상이
 - * 13개 은행(국민, 농협, 우리, 기업, SC, 씨티, 수협, 아이엠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토스)은 업무방법서에 반영, 6개 은행(산업, 신한, 하나, 제주, 케이, 카카오)은 미반영

3. 향후 일정

- '25년 중 숲은행 업무방법서 등 내부지침에 반영 추진